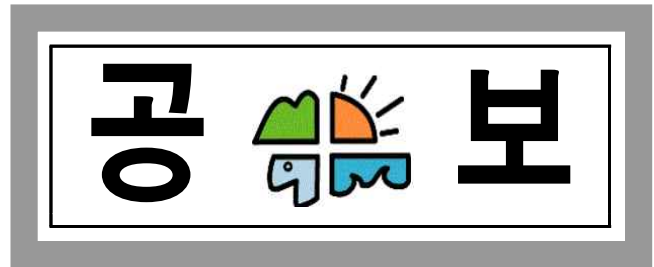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45호 2023년 2월 10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한화리조트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동 B·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6

공 고

- 속초시 소로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31

입법예고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6

속초시고시 제2023-19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한화리조트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시 고시 제2023-10호(2023.1.13.)로 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한화리조트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관광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2월 10일
속 초 시 장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32,578	-	1,332,578	100.0	
계획관리지역	1,332,578	-	1,332,578	100.0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설악한화리조트 조성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1,332,578	-	1,332,578	1995. 10.2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설악한화리조트 조성 (관광휴양형)지구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1,332,578	-	1,332,578	

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1,332,578		1,332,578		
①	골프장 지 구	소 계		834,352		834,352		
		1	체육시설용지	434,400	속초시 장사동 11 일원	614,752	증) 180,352	
		2	녹 지 용 지	399,952	속초시 장사동 산123 일원	219,600	감) 180,352	
	관광 휴양 지구	소 계		498,226		498,226		
		3	숙박시설용지	318,861	속초시 장사동 24-1 일원	320,992	증) 2,131	
		4	관광휴양용지	107,818	속초시 장사동 24-9 일원	107,818		
		5	공공시설용지	49,225	속초시 장사동 24-32일원	50,512	증) 1,287	
		6	운동·오락시설용지	932	속초시 장사동 24-46,24-9	932		
		7	녹 지 용 지	21,390	속초시 장사동 24-66일원	17,972	감) 3,418	

2.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 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총 계		1,332,578		1,332,578	-	
골프장 지구 합계		834,352		834,352	-	
소계(체육시설용지)		434,400		614,752	증 180,352	
1-1	체육시설	430,390	속초시 장사동 11체	610,742	증 180,352	
1-2	클럽하우스	4,010	속초시 장사동 11체	4,010	-	
소계(녹지용지)		399,952		219,600	감 180,352	
2-1	원형녹지	399,952	속초시 장사동 산123임 외	219,600	감 180,352	
관광휴양지구 합계		498,226		498,226	-	
소계(숙박시설용지)		318,861		320,992	증 2,131	
3-1	콘도1	69,288	속초시 장사동 24-1대	69,288	-	
3-2	콘도2	102,795	속초시 장사동 24-39대	102,795	-	
3-3	콘도3	70,053	속초시 장사동 24-10원	70,053	-	
3-4	콘도4	76,725	속초시 장사동 24-66대	78,856	증 2,131	
소계(관광휴양용지)		107,818		107,818	-	
4-1	온천장	80,410	속초시 장사동 24-9대	80,410	-	
-	드라마세트장	-	속초시 장사동 24-66임	-	-	
4-2	레이크가든	27,408		27,408	-	
소계(공공시설용지)		49,225		50,512	증 1,287	
5-1	주차장	17,598	속초시 장사동 24-10원	17,598	-	
5-2	도 로	22,896	속초시 장사동 24-32대	24,183	증 1,287	
5-3	배수지	5,542	속초시 장사동 24-60임	5,542	-	
5-4	변전소	3,189	속초시 노학동 1011-60대	3,189	-	
소계(운동·오락시설용지)		932		932	-	
6-1	플라잉폭스	932	속초시 장사동 24-46대 외	932	-	
소계(녹지용지)		21,390		17,972	감 3,418	
7-1	원형녹지	21,390	속초시 장사동 산146임 외	17,972	감 3,418	

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채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1-1	속초시 장사동 11체	용 도	골프장 부대시설	
			건폐율	1.0%이하(1,919㎡/430,390㎡)	
			용적율	1.0%이하(2,023㎡/430,390㎡)	
			높 이	지상 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벽체 : 미색, 회색 지붕 : 갈색	
변경	1-1	속초시 장사동 11체	용 도	골프장 부대시설	
			건폐율	1.0%이하(2,190.68㎡/614,752㎡)	
			용적율	1.0%이하(2,294.68㎡/614,752㎡)	
			높 이	지상 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벽체 : 미색, 회색 지붕 : 갈색	
기정	1-2	속초시 장사동 11체	용 도	클럽하우스	
			건폐율	35%이하(1,364㎡/4,010㎡)	
			용적율	88%이하(3,500㎡/4,010㎡)	
			높 이	지상 4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벽체 : 회색 지붕 : 갈색	
기정	3-1	속초시 장사동 24-1대	용 도	콘도 1	
			건폐율	20%이하(12,570㎡/69,288㎡)	
			용적율	100%이하(58,813㎡/69,288㎡)	
			높 이	지하 1층, 지상 6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형 지붕	
			색 채	벽체 : 베이지색 지붕 : 갈색	
기정	3-2	속초시 장사동 24-39대	용 도	콘도2	
			건폐율	12%이하(11,650㎡/102,795㎡)	
			용적율	64%이하(64,378㎡/102,795㎡)	
			높 이	지하 1층, 지상 7층	
			배 치	도면참조(부대시설 배치변경)	
			형 태	경사형 지붕	
			색 채	벽체 : 베이지색	
기정	3-3	속초시 장사동 24-10원	용 도	콘도3	
			건폐율	19%이하(11,922㎡/70,053㎡)	
			용적율	106%이하(73,491㎡/70,053㎡)	
			높 이	지하 2층, 지상 15층	
			배 치	도면참조(집합형 1동, 단독형 3동)	
			형 태	경사형 지붕	
			색 채	벽체 : 베이지색 지붕 : 갈색	

구분	도면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3-4	속초시 장사동 24-66대	용 도	콘도4	
			건폐율	30%이하(18,700㎡/76,725㎡)	
			용적율	100%이하(48,100㎡/49,261.82㎡)	
			높 이	지하 3층, 지상 8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평지붕	
			색 채	벽체 : 미색 지붕 : 갈색	
변경	3-4	속초시 장사동 24-66대	용 도	콘도4	
			건폐율	40%이하(28,375.03㎡/78,901㎡)	
			용적율	100%이하(50,446.72㎡/78,901㎡)	
			높 이	지하 3층, 지상 8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평지붕	
			색 채	벽체 : 미색 지붕 : 갈색	
기정	4-1	속초시 장사동 24-9대	용 도	온천장	
			건폐율	20%이하(14,860㎡/80,410㎡)	
			용적율	40%이하(27,488㎡/80,410㎡)	
			높 이	지하 2층, 지상 3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벽체 : 미색 지붕 : 갈색	
기정	5-4	속초시 노학동 1011-60대	용 도	변전소	
			건폐율	20%이하(600㎡/3,189㎡)	
			용적율	20%이하(600㎡/3,189㎡)	
			높 이	지상 1층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슬라브형 지붕	
			색 채	벽체 : 회색 지붕 : 회색	
기정	6-1	속초시 장사동 24-9대	용 도	플라잉폭스(매표소)	
			건폐율	2%이하(7.5㎡/932㎡)	
			용적율	2%이하(7.5㎡/932㎡)	
			높 이	지상1층	
			배 치	1동	
			형 태	경사지붕	목조
			색 채	벽체 : 갈색 지붕 : 회색	

속초시 고시 제2023-20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동 B·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강원도 고시 제2022-466호(2022.12.23.)로 고시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속초도시관리계획(설악동 B·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승인 고시한 “속초시 고시 제2022-203호(2022. 12. 23.)의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동 B·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관련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2월 10일

속 초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정정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정정없음)

1) 설악동 B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	설악1구역(B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설악동 34번지 일원	145,493	증) 6,793	152,286	강원도고시 제2013-143호 (2013.4.2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기정	변경	
변경	14	속초시 설악동 34번지 일원	145,493	152,286	◦ 설악동 재건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육쉼터 및 쌍천변 산책로(경관녹지 B호) 조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2) 설악동 C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5	설악2구역(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설악동 246-36번지 일원	118,073	-	118,073	강원도고시 제2013-143호 (2013.4.26.)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정정없음)

가. 설악동 B지구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정정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5,493	증) 6,793	152,286	100.0	
상업지역	소계	145,493	-	145,493	95.5	
	일반상업지역	145,493	-	145,493	95.5	
녹지지역	소계	-	증) 6,793	6,793	4.5	
	보전녹지지역	-	증) 6,793	6,793	4.5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설악동 34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6,793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보전 녹지지역 편입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4	설악동 소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설악동 20-5번지 일원	-	1,381	강원도고시 제2013-143호 (2013.4.26.)	천연기념물 제351호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정정없음)

가) 교통시설

① 도 로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1	2,142	27,303	1	328	3,515	3	1,130	19,194	7	684	4,594
중로	3	1,130	19,194	—	—	—	3	1,130	19,194	—	—	—
소로	8	1,012	8,109	1	328	3,515	—	—	—	7	684	4,594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0	15	보조간선도로	5,075	중로1-5 도문동 15-1도	설악동 346-1도	일반도로	—	속초시고시 제2013-16호	—
변경	중로	2	30	15 ~ 19	보조간선도로	5,075 (446)	중로1-5 도문동 15-1도	설악동 346-1도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58	12	보조간선도로	79	중로2-30 설악동 17-2도	중로3-52 설악동 17-2도	일반도로	—	속초시고시 제2013-16호	—
변경	중로	2	39	15	보조간선도로	84	설악동 17-2도	설악동 17-2도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57	12	보조간선도로	610 (600)	중로2-30 설악동 15-10도	설악동 75-4도	일반도로	—	속초시고시 제2013-16호	—
변경	중로	2	41	12~20	보조간선도로	610 (600)	중로2-30 설악동 15-10도	설악동 75-4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90	10	국지도로	328	설악동 22-3도	설악동 223-13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06	7	국지도로	124	설악동 51-2도	설악동 51-2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07	7	국지도로	220	설악동 221-40구	설악동 41-3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08	7	국지도로	49	설악동 22-3도	설악동 22-3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09	4	국지도로	55	설악동 22-3도	설악동 22-3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10	6	국지도로	31	설악동 22-3도	설악동 22-3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11	7	국지도로	36	설악동 22-3도	설악동 22-3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12	6	국지도로	169	설악동 2-4잡	설악동 17-2도	일반도로	—	—	—

※ ()는 구역 내부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30	중로2-30	◦ 변경 - B=15m → 15~19m, L=5,075m(446m)	◦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중로3-58	중로2-39	◦ 변경 - B=12m → 15m, L= 79m → 84m	◦ 설악동 재건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중로3-57	중로2-41	◦ 변경 - B=12m → 12~20m L=610m(600m)	◦ 1개 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	소로1-90	◦ 신설 - B= 10m, L= 328m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폐지에 따라 의제 처리로 폐지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속초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 도로로 재지정
-	소로3-306	◦ 신설 - B= 7m, L= 124m	
-	소로3-307	◦ 신설 - B= 7m, L= 220m	
-	소로3-308	◦ 신설 - B= 7m, L= 49m	
-	소로3-309	◦ 신설 - B= 4m, L= 55m	
-	소로3-310	◦ 신설 - B= 6m, L= 31m	
-	소로3-311	◦ 신설 - B= 7m, L= 36m	
-	소로3-312	◦ 신설 - B= 6m, L= 169m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5	설악동 3-1번지 일원	-	증) 13,681	13,681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5	주차장	◦ 위치 : 설악동 3-1번지 일원 ◦ 면적 : 13,681㎡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폐지에 따라 의제처리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속초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으로 재지정

나) 공간시설

① 광 장

■ 광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0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설악동 38-1번지 일원	-	증) 1,505	1,505	-	

■ 광장 결정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광 장	◦ 위치 : 설악동 38-1번지 일원 ◦ 면적 : 1,505㎡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폐지에 따라 의제처리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속초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 광장으로 재지정

②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③ 녹 지

■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녹 지	경관녹지	설악동 15-21번 지 일원	—	증) 1,381	1,381	—	
신설	6	녹 지	경관녹지	설악동 15-27번 지 일원	—	증) 537	537	—	
신설	7	녹 지	경관녹지	설악동 3-10번지 일원	—	증) 6,793	6,793	—	

■ 녹지 결정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경관녹지	- 위치 : 설악동 15-21번지 - 면적 : 1,381㎡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폐지에 따라 의제 처리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속초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 경관녹지로 재지정
6	경관녹지	- 위치 : 설악동 15-27번지 - 면적 : 537㎡	설악동재건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7	경관녹지	- 위치 : 설악동 3-10번지 - 면적 : 6,793㎡	설악동재건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정정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연번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고
신규	1	가	1	7,253	숙박시설
			2	55,405	
신규	2	나	—	18,797	상가시설
신규	3	다	—	10,932	공공편익시설
신규	4	라	—	3,837	운동오락시설
신규	5	마	—	4,862	휴양문화시설

나)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연번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가	1	51대, 54-1대, 56대, 27-6잡	2,531	공동개발권장	27-6 : 390㎡, 51 : 1,597㎡ 54-1 : 414㎡ 56 : 130㎡ 맹지형 토지
		2	57대, 산11임	1,833	공동개발권장	57 : 499㎡ 산11 : 1,334㎡ 맹지형 토지
		3	27-8잡, 27-3대, 28대	1,143	공동개발권장	27-8 : 480㎡ 27-3 : 129㎡ 28 : 534㎡ 적정 대지규모 확보
		4	26대, 26-4대	776	공동개발권장	26 : 469㎡ 26-4 : 307㎡ 적정 대지규모 확보
		5	23대, 산8임	1,510	공동개발권장	23 : 1,347㎡ 산8 : 163㎡ 맹지형 토지
		1	20-9대, 40-1대	1,181	공동개발권장	20-9 : 1,102㎡ 40-1 : 79㎡ 동일소유자 인접 토지
		1	2-3대, 12-4대	1,466	공동개발권장	2-3 : 180㎡ 12-4 : 1,286㎡ 동일소유자 인접 토지

4)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정정)

① 숙박시설

■ 당초

가 구 번 호	획 지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1	설악동 74-3번지 일원	권장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용도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30.2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입면에 사용하는 재료는 3가지 이내로 간소화 ◦ 고광택의 금속이나 반사재 사용을 지양 ◦ 저층부 벽면 재료는 친근하고 안전한 재질을 사용
			색 채	◦ 주조색은 Off-White계열이나 적벽돌, 황토벽돌 등 중명도, 저채도의 Brown 계열 중간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선택 ◦ 벽돌 및 목재의 느낌을 내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소3-306호선 ※ 연면적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 정정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	1	설 악 동 74-3번지 일원	용도	권장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차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 이		30.2m 이하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와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입면에 사용하는 재료는 3가지 이내로 간소화 ◦ 고광택의 금속이나 반사재 사용을 지양 ◦ 저층부 벽면 재료는 친근하고 안전한 재질을 사용
			색 채		◦ 주조색은 Off-White계열이나 적벽돌, 황토벽돌 등 중명도, 저채도의 Brown 계열 중간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선택 ◦ 벽돌 및 목재의 느낌을 내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소3-306호선 ※ 연면적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 정정사유 : B지구 숙박시설용지 가-1(설악동 74-3번지 일원)에 한하여 기존 건축물 현황(높이) 유지를 위해 30.2m 이하 계획에 따른 고시문 표기오류로 인한 정정

가 구 번 호	획 지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2	설악동 59-1번지 일원	용 도	권장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차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24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입면에 사용하는 재료는 3가지 이내로 간소화 ◦ 고광택의 금속이나 반사재 사용을 지양 ◦ 저층부 벽면 재료는 친근하고 안전한 재질을 사용
			색 채		◦ 주조색은 Off-White계열이나 적벽돌, 황토벽돌 등 중명도, 저채도의 Brown 계열 중간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선택 ◦ 벽돌 및 목재의 느낌을 내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중3-57호선 ◦ 건축한계선 2m : 소1-90호선 ◦ 건축한계선 1m : 소3-306호선, 소3-307호선, 소3-309호선, 소3-310호선, 소3-311호선 ※ 연면적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② 상가시설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나	-	설악동 34 번지 일원	용 도	권장	◦ 판매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 관광휴게시설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차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24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고광택의 금속이나 반사재 사용을 지양 ◦ 저층부 벽면 재료는 친근하고 안전한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가도에 면한 부분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 재료(유리)를 권장
			색 채		◦ 주조색은 Off-White계열이나 적벽돌, 황토벽돌 등 중명도, 저채도의 Brown 계열 중간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선택 ◦ 벽돌 및 목재의 느낌을 내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중2-30호선, 중3-57호선 ◦ 건축한계선 2m : 소1-90호선 ◦ 건축한계선 1m : 소3-307호선, 소3-308호선, 소3-312호선 ※ 연면적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③ 공공편익시설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다	-	설 약 동 43-1번지 일원	용 도	권장	◦ 관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24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좌우대칭의 권위적 입면을 지양하고, 지역특성과 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입면을 권장 ◦ 보행가로에 면한 부분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 재료(유리)를 권장
			색 채		◦ 주조색은 Off-White계열이나 적벽돌, 황토벽돌 등 중명도, 저채도의 Brown 계열 중간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선택 ◦ 낮은 채도의 색조를 주조로 차분하게 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색채를 보조색으로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중2-30호선, 중2-39호선, 중3-57호선 ※ 연면적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④ 운동오락시설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라	-	설 악 동 12-4번지 일원	용 도	권장	◦ 운동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볼링장, 공연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관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수련시설 ◦ 숙박시설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24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색 채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을 주조로 하되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중2-30호선 ◦ 건축한계선 1m : 소3-312호선 ※ 연면적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⑤ 휴양문화시설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마	-	설악동 3-2번지 일원	용 도	권장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볼링장, 공연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 관광휴게시설 ◦ 수련시설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륜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24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색 채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을 주조로 하되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사용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3m : 중2-30호선 ※ 연면적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정정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1~3m)이 지정된 획지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 교차로 결절부 및 보행결절점 ◦ 공개공지의 확보는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준수 -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 10% 이상 - 종교시설 : 5% 이상 -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제외) : 대지면적 5% 이상 - 운수시설 : 대지면적 5% 이상 - 의료시설 : 대지면적 5% 이상 - 업무시설 : 대지면적 5% 이상 - 숙박시설 : 대지면적 5% 이상 -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 10% 이상	

나)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이 불허된 구간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불허	결정도 참조

나. 설악동 C지구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정정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8,073	—	118,073	100.0	
상업지역	소계	115,546	—	115,546	97.9	
	일반상업지역	115,546	—	115,546	97.9	
녹지지역	소계	2,527	—	2,527	2.1	
	보전녹지지역	2,527	—	2,527	2.1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정정없음)

가) 교통시설

① 도 로

■ 도로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9	2,302	27,978	—	—	—	3	1,192	19,948	6	1,110	8,030
중로	2	1,012	18,439	—	—	—	2	1,012	18,439	—	—	—
소로	7	1,290	9,539	—	—	—	1	180	1,509	6	1,110	8,030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0	15	보조간선도로	5,075	중로1-5 도문동 15-1도	설악동 346-1도	일반도로	-	속초시고시 제2013-16호	-
변경	중로	2	30	15 ~ 19	보조간선도로	5,075 (913)	중로1-5 도문동 15-1도	설악동 346-1도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32	15	보조간선도로	99	설악동 246-121도 (중로2-30)	6호유원지 설악동 323-2임	일반도로	-	속초시고시 제 2013-16호 (2013.05.06.)	-
신설	소로	2	219	8~10	국지도로	180	설악동 246-32도	설악동 246-32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13	6	국지도로	237	설악동 246-32도	설악동 246-32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14	7~10	국지도로	279	설악동 246-32도	설악동 246-32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15	7~10	국지도로	204	설악동 246-32도	설악동 246-32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16	7	국지도로	162	설악동 246-32도	설악동 246-32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17	6	국지도로	124	설악동 246-32도	설악동 246-32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18	4~6	국지도로	104	설악동 246-32도	설악동 246-32도	일반도로	-	-	-

※ ()는 구역 내부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30	중로2-30	◦ 변경 - B= 15m → 15~19m L= 5,075m(913m)	◦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	소로2-219	◦ 신설 - B= 8~10m, L= 180m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폐지에 따라 의제 처리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속 초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 도로 로 재지정
-	소로3-313	◦ 신설 - B= 6m, L= 237m	
-	소로3-314	◦ 신설 - B= 7~10m, L= 279m	
-	소로3-315	◦ 신설 - B= 7~10m, L= 204m	
-	소로3-316	◦ 신설 - B= 7m, L= 162m	
-	소로3-317	◦ 신설 - B= 6m, L= 124m	
-	소로3-318	◦ 신설 - B= 4~6m, L= 104m	

나) 공간시설

①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0	공 원	문화공원	설악동 246-6번 지 일원	-	증) 744	744	-	
신설	12	공 원	문화공원	설악동 246-91 번지 일원	-	증) 1,631	1,631	-	
신설	13	공 원	문화공원	설악동 246-47 번지 일원	-	증) 1,724	1,724	-	

■ 공원 결정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문화공원	- 위 치 : 설악동 246-6번지 - 면적 : 744㎡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폐지에 따라 의제 처리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속초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재지정
12	문화공원	- 위 치 : 설악동 246-91번지 일원 - 면적 : 1,631㎡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폐지에 따라 의제 처리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속초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재지정
13	문화공원	- 위 치 : 설악동 246-47번지 일원 - 면적 : 1,724㎡	설악동재건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문화공원 신설

③ 녹 지

■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	녹 지	경관녹지	설악동 246-18 번지 일원	-	증) 2,788	2,788	-	

■ 녹지 결정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녹지	◦ 위치 : 설악동 246-18번지 ◦ 면적 : 2,788㎡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폐지에 따라 의제 처리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속초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 경관녹지로 재지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정정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연번	가구번호	면적(㎡)	비고
신설	1	가	64,873	숙박시설
신설	2	나	11,650	상가시설
신설	3	다	4,317	공공편익시설
신설	4	라	2,368	휴양문화시설

나)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연번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가	1	2 4 8 - 1 6 대 , 250-1대	2,364	공동개발권장	248-16 : 47㎡ 250-1 : 2,317㎡
						동일소유자 인접토지
		2	2 4 6 - 4 6 대 , 246-127대	2,298	공동개발권장	246-46 : 2,278㎡ 246-127 : 20㎡
						동일소유자 인접토지

4)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정정없음)

① 숙박시설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	설악동 245-18번 지 일원	용 도	권장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륜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24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와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입면에 사용하는 재료는 3가지 이내로 간소화 ◦ 고광택의 금속이나 반사재 사용을 지양 ◦ 저층부 벽면 재료는 친근하고 안전한 재질을 사용
		색 채		◦ 주조색은 Off-White계열이나 적벽돌, 황토벽돌 등 중명도, 저채도의 Brown 계열 중간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선택 ◦ 벽돌 및 목재의 느낌을 내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색채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3m : 중2-30호선 ◦ 건축한계선 2m : 소2-219호선, 소3-314호선, 소3-315호선, 소3-316호선, 소3-318호선 ◦ 건축한계선 1m : 소3-313호선, 소3-317호선 ※ 연면적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② 상가시설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나	설악동 246-36번 지 일원	용 도	권장	◦ 판매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 관광휴게시설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24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고광택의 금속이나 반사재 사용을 지양 ◦ 저층부 벽면 재료는 친근하고 안전한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가도에 면한 부분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 재료(유리)를 권장
		색 채		◦ 주조색은 Off-White계열이나 적벽돌, 황토벽돌 등 중명도, 저채도의 Brown 계열 중간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선택 ◦ 벽돌 및 목재의 느낌을 내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색채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3m : 중2-30호선 ◦ 건축한계선 2m : 소3-315호선 ※ 연면적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③ 공공편익시설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다	설 악 동 248-2번지 일원	용 도	권장	◦ 관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24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좌우대칭의 권위적 입면을 지양하고, 지역특성과 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입면을 권장 ◦ 보행가로에 면한 부분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 재료(유리)를 권장
		색 채		◦ 주조색은 Off-White계열이나 적벽돌, 황토벽돌 등 중명도, 저채도의 Brown 계열 중간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선택 ◦ 낮은 채도의 색조를 주조로 차분하게 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색채를 보조색으로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 소3-314호선, 소3-315호선 ※ 연면적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④ 휴양문화시설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라	설악동 246-33번 지 일원	용 도	권장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볼링장, 공연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 관광휴게시설 ◦ 수련시설
			허용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
			불허	◦ 종교시설 중 봉안당,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륜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24m 이하) ¹⁾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
		색 채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을 주조로 하되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사용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3m : 중2-30호선 ◦ 건축한계선 2m : 소3-314호선, 소3-315호선 ◦ 건축한계선 1m : 소3-313호선 ※ 연면적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속초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3m 이상을 따른다

1) 단, 각 시설용지별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정정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1~3m)이 지정된 획지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 교차로 결절부 및 보행결절점 ◦ 공개공지의 확보는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준수 -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 10% 이상 - 종교시설 : 5% 이상 -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제외) : 대지면적 5% 이상 - 운수시설 : 대지면적 5% 이상 - 의료시설 : 대지면적 5% 이상 - 업무시설 : 대지면적 5% 이상 - 숙박시설 : 대지면적 5% 이상 -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 10% 이상	

나)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이 불허된 구간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불허	결정도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정정없음)

1)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 로

▣ 도로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	433	6,279	-	-	-	1	433	6,279	-	-	-
중 로	1	433	6,279	-	-	-	1	433	6,279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0	15	보조간선 도로	5,075	도문동 15-1도 (중로1-5)	설악동 346-1도	일반도로	-	속초시고시 제2013-16호 (2013.05.06.)	
변경	중로	2	30	15 ~19	보조간선 도로	5,075 (433)	도문동 15-1도 (중로1-5)	설악동 346-1도	일반도로	-	-	

※ ()는 구역 내부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30	중로2-30	변경 - B= 15m → 15~19m L= 5,075m(433m)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②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7	설악동 309번지 일원	41,657	감) 1,243	40,414	속초시고시 제2013-16호 (2013.05.06.)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주차장	- 위치 : 설악동 309번지 일원 - 면적 : 41,657㎡ → 40,414㎡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도로 폭원 확장으로 주차장 면적 변경

3.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속초시 소로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중도문『소로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속 초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2호선)
- 명 칭 : 소로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성 명 : 속초시장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821-148번지 외 12필지

라.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도 로	소로1-12호선	B=10m, L=199m	B=10m, L=199m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 세부내역 별지 참조

구분	소재지 등	비고
토지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821-148번지 외 12필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권리관계 일체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가. 열람장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033-639-2421)

나. 열람기간 : 2023. 2. 8. ~ 2023. 2. 23.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속초시청 문화체육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보상액 산정완료 시 보상협의 요청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및 통지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시, 도지사 및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개별 통지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6. 기타사항

- 가.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상 협의 요청 시에 손실보상 협의요청 문서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 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 다. 보상대상 편입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 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각각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 인	연락처	비 고
			성 명	주 소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033-639-24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물 건 조 서 (1)

도시계획도로(소로1-12호선) 개설공사

[illegible]

토 지 조 서 (1/2)

■ 도시계획도로(소로1-12호선) 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면 인척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 유 권 이외권리
1	도문동	821-148	구거	575	50	국유지	국토해양부			
2	"	821-149	구거	941	44	국유지	국토해양부			
3	"	1310-1	도로	1,016	25	오선아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209, 1408동 1001호 (동패동, 책향기마을 우남퍼스트빌)			
						김상수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2동 502호 (내손동, 의왕내손이편한세상아파트)			
						김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10, 905동 902호(일산동, 후곡마을)			
						김영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79길 62, 702동 502호(상일동, 주공아파트)			
4	"	1310-2	잡종지	223	44	공유지	강원도			
5	"	1311-2	답	116	51	김시범	속초시 도문동 599			
6	"	1311-3	전	1,342	134	국유지	기획재정부			
7	"	1311-4	임야	3,749	366	중도문2리 새마을협의회	속초시 도문동 896			
8	"	1316	전	2,285	435	신봉순	속초시 민천4길 1. 3동 1506호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동명새마을금고	속초시 동명동 450-105	근저당
9	"	1317	과수원	1,905	6	박은옥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3389번길 10, 104동 1009호			
10	"	1338-7	도로	2,047	31	국유지	국토해양부			
11	"	1340	임야	3,260	626	강수창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4-1			
12	"	1351-3	답	785	26	오선아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209, 1408동 1001호 (동패동, 책향기마을 우남퍼스트빌)			
						김상수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2동 502호 (내손동, 의왕내손이편한세상아파트)			
						김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10, 905동 902호(일산동, 후곡마을)			
						김영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79길 62, 702동 502호(상일동, 주공아파트)			
13	"	1400-2	하천	72,789	199	속초시				
합 계		13 필지		91,033.0	2,037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공동주택이 2023년 2~3월 준공 및 입주 예정으로 동명동 통·반을 신설하여 전입신고 등 동 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안 별표)
 - 동명동 2개통 8개반 신설

구 분		조 정 내 역		증 감 내 역
		조 정 전	조 정 후	
속초시 전체	통 수	246	248	2
	반 수	1,211	1,219	8
동명동	통 수	17	19	2
	반 수	82	90	8

- 영랑동 제1통 제3반 대표 번지 변경 : 113-5번지→113번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137 / 팩스 033-639-2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639-2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별의 총 및 동명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	248	1,219	
동명동	19	90	

별표 중 영랑동의 제3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명동의 제17통란 다음에 제 18통 및 제19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13	일원	
동명동	제 18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1동
		제 2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2동
		제 3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3동
		제 4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4동
동명동	제 19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5동
		제 2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6동 아파트내 상가
		제 3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7동
		제 4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8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